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909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2023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2023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3,839백만원에서 3,886백만원으로 47백만원 증가함.

나. 서울광역자활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실집행잔액(발생이자) 등 반영으로 「기타수입」 금액이 당초 43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33백만원 감소 및 매입임대보증금 환수계획('23년 1,765백만원)에 따른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금액이 당초 800백만원에서 2,047백만원으로 1,24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추가 수요조사 결과 「민간융자금」 지출금액이 당초 265백만원에서 335백만원으로 70백만원이 증가함.

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4,165백만원에서 5,356백만원으로 1,191백만원 증가하여 28.6% 변경되었음.

라.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당초(A) | 변경(B) | 증감(B-A) |
|-----------------|-------|-------|---------|
| 계 | 5,041 | 6,302 | 1,261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800 | 2,047 | 1,247 |
| 이자수입 | 359 | 359 | 0 |
| 기타수입 | 43 | 10 | △33 |
| 예치금회수 | 3,839 | 3,886 | 47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당초(A) | 변경(B) | 증감(B-A) | |
|--------|-------|-------|---------|-------|
| 계 | 5,041 | 6,302 | 1,261 | |
| 정책사업비 | 비용사업 | 606 | 606 | 0 |
| | 융자성업 | 265 | 335 | 70 |
| 행정운영경비 | 기본비 | 5 | 5 | 0 |
| | 예치금 | 4,165 | 5,356 | 1,191 |

Ⅲ. 검토의견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12억 6,100만원을 수입계획중 용자금 회수(12억 4,700만원), 기타수입(△3,300만원), 예치금 회수(4,700만원)에 각각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에도 예치금(11억 9,100만원)과 용자성사업비(민간용자금 7,000만원)에 반영하고자 해당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¹⁾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동 계정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일반예산(재무활동)**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28.6%, 11억 9,100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표 3-1〉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 당 초 (A) |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B) | 증 감 (C=B-A) | 증 감 륜 (D=C/A) |
|-------------------------------|--------------|-------------------------|------------------|--------------------|
| 지출합계 | 5,041 | 6,302 | 1,261 | 25.0 |
|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 871 | 941 | 70 | 8.0 |
| 일반예산 (재무활동) | 4,165 | 5,356 | 1,191 | 28.6 |
| 보전지출 (자활지원과)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 4,165 | 5,356 | 1,191 | 28.6 |
| 여유자금 예치 | 4,165 | 5,356 | 1,191 | 28.6 |
| 행정운영경비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5 | 5 | - | - |

※ 자료근거 :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지출계획,
②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23. 5.30) 재구성

○ 아울러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수·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²⁾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7조(자활계정)

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서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요시 추가적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기재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인 ①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②**일반예산(재무활동)**, ③**행정운영경비**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바,

- 정책사업명을 편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9.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 10.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지원
 - 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 12.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 13. 저소득 시민 자활사업 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 14.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당 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